

## 중국 산둥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무역분쟁해결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f the Dispute Resolution for  
the Korean Companies in Shandong area of China

김 종 혁\* Jong-Hyuk Kim  
동 등\*\* Dong Deng  
김 석 철\*\*\* Suk-Chul Kim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시사점 |
| II. 중국 산둥지역 무역 및 투자 현황 | 참고문헌         |
| III.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    | Abstract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둥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둥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 제1저자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박사과정, 제2저자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교신저자

러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둥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둥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중국 산둥지역, 무역 분쟁, 추론적 분석, 기업 규모, 기업 유형

## I. 서론

중국은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국가이다. 더불어, 국제거래 및 교류에 있어서도 2004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제 1위의 무역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대 중국 수출은 2014년 기준, 약 1,453억 달러이고 수입은 901억 달러로 1992년 수교 이후 약 37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 한국 총 교역액 규모 또한 수교 이후와 비교하여 2014년 총 교역액 2,907억 달러 기준 약 57배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 한국의 중국 산둥 지역 무역 총액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약 352억 달러로 총 한중 무역 규모의 약 15%를 차지하였고 중국 산둥성 내 한국 투자 기업의 수는 7,894개, 실제 투자금액은 약 94억 달러로 전체 투자건수 중 약 20%가 산둥성에 집중되었다(문환규, 김재철, 임형섭, 조창완, 王信東, 2014).

그러나 한·중 양국은 모두 동북아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로 비슷한 문화 영향권 내 있지만, 자국민 우대주의,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간의 정치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무역에 있어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산둥 지역 간에 무역·투자 분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무역 실무자들이 중국의 무역 분쟁해결제도 및 클레임의 해소방안 등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동등, 김석철,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무역 현황 및 중국 산둥지역 진출 한국 기업의 무역 분쟁실증조사를 통해 중국 산둥지역 무역 분쟁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 기업이 무역 및 투자 활동을 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칭다오 무역관에서 발표한 중국 산둥성 경제 현황 자료 및 대한상사중재원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중국 국제경제중재위원회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산둥성 주요 지역 (칭다오 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뿐만 아니라, 한중 기업 간 클레임 발생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둥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에 따른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산둥성 주요 지역 간의 무역 및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무역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적 추론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시행하였다. 4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한국과 중국 산둥지역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중국 산둥지역 무역 및 투자 현황

### 1. 산둥성의 무역 및 투자 현황

산둥성은 17개 시, 51개 시 직할구, 28개 현급 시, 58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도시는 지난시 (濟南市), 칭다오시 (靑島市), 즈보시 (淄博市), 동잉시 (東營市), 옌타이시 (煙臺市), 웨팡시 (濰坊市), 지닝시 (濟甯市), 웨하이시 (威海市)가 있으며, 한중 자유무역 협작 시범구인 '웨하이 (威海)-인천 자유경제무역구역 (IFEZ)'을 지정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칭다오 무역관, 2015). GDP규모는 2014년의 기준, 9,176억 달러 (1 CNY = 0.15 USD)로 이는 중국 전체 GDP의 9.3%에 해당한다(문환규 외, 2014).

〈표 1〉 2011년~2014년 산둥성의 수출입 현황(단위: 억불,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증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액	2,359.9	24.9	2,455.4	4.0	2,671.6	8.8	2,771.2	3.7
수출	1,257.9	20.7	1,287.3	2.3	1,345.1	4.5	1,447.5	7.6
수입	1,102.0	30.1	1,168.1	6.0	1,326.5	13.6	1,323.7	-0.2

〈표 1〉에서와 같이, 2012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외무역 교역이 다소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전체 교역액은 약 2,771억 달러에 달한다(산동성 상무부, 2016).

〈표 2〉 산동성 해외투자 현황(단위: 억불, 건)

구분	해외 투자 기업의 수			해외투자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계	361	443	524	36.6	45.1	62.9
교역형 기업	132	181	226	5.1	8.8	13.9
비 교역형 기업	209	234	257	31.5	36.4	48.9
자원개발기업	53	58	31	14.2	10.9	13.6

〈표 2〉는 2014년, 중국 산동성 내 해외 투자기업의 수가 524건으로 전년 대비 18.3%를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투자금액은 6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5% 증가했다(산동성 상무부, 2016).

〈표 3〉 2010년~2014년 산동성 해외자본 이용 현황(단위: 억불,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	1632	1433	1333	1405	1352
해외투자 금액	91.7	111.6	123.5	140.5	152.0

〈표 3〉에서 보면, 산동성의 2014년 해외자본은 15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7.8%를 증가하였고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1,352개로 전년 비 3.8%를 하락하였다. 총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50개이며, 세계 500대 기업이 실시한 프로젝트는 22개로 이와 관련한 해외자본은 약 4.1억 달러에 달한다(산동성 상무부, 2016).

## 2. 한국과 중국 산동성 간의 무역 및 투자 현황

〈표 4〉에서 보면, 2014년 한국의 대 중국 산동성 무역 총액은 351.5억 달러로 전년 비 6.9%를 증가했다.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칭다오 무역관, 2015).

〈표 4〉 한국의 대 중국 산동성 무역 현황(단위: 억불,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액	326.6	6.4	316.7	-3.0	328.6	3.7	351.5	6.9
대 산동성 수출	174.9	5.6	177.9	1.7	193.7	8.9	203.7	5.2
대 산동성 수입	151.7	7.3	138.8	-8.5	134.9	-2.8	147.8	9.6
무역수지	23.2	-4.4	39.1	68.3	58.8	50.4	55.9	-1.8

〈표 5〉 한국 기업의 산동성 투자 현황(단위: 억불, 개)

2011		2012		2013		2104		누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196	8.1	155	5.3	190	2.9	155	3.1	7,894	94.3

또한, 중국 산동성은 한국 10대 투자 지역 중 한 곳으로 전체 투자건수 중 2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말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산동성 투자 기업의 수는 7,894개이며, 투자금액은 약 94억 달러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중국 산동성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차츰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상승하였다(칭다오 무역관, 2015). 이는, 여전히 많은 한국 기업이 대 산동성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래 3절에서 서술하는 한국과 중국 산동성 내 각 도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 3. 한국과 중국 산동성 간의 무역 및 투자 현황

산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대외 개방을 실시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는 중국 동부 해안을 끼고 황하 하류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서해와 마주하면서 한반도 및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한 그 지리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문화규 외, 2014). 더불어,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인접하고 정기 해운 및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칭다오(靑島)-지난(濟南), 옌타이(煙台), 웨하이(威海) 지역이 산동성 전체 투자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특수성을 방증한다. 중국 산동성 주요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칭다오시(靑島市)의 경제 및 무역 현황

칭다오시의 총 면적은 서울의 약 18.5배이며, 2014년 말 인구는 약 905만 명이다. 칭

다오시는 총 6개구와 5개 현급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및 칭다오수출가공구 등 4개 국가급 대외개방중점구를 포함한다. 2014년 기준, 칭다오시의 GDP 규모는 약 1,304억 달러이며, 대외무역 교역 규모는 798.9억 달러이다(칭다오시 통계공보, 2015). 2014년 한국은 대 칭다오 투자 프로젝트로 총 248개를 진행하였으며, 계약된 외자 규모는 약 1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다. 2014년까지 한국의 대 칭다오의 누적 프로젝트는 11,641개이며, 계약된 외자 규모는 247.8억 달러이다(칭다오 무역관, 2015).

## 2) 한국과 옌타이시 (煙台市)의 경제 및 무역 현황

옌타이시의 총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22.5배이며, 2014년 말 인구는 약 700만 명이다. 총 4개구, 7개 현급 시 및 1개 현 (長島縣)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기술개발구, 보세항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곤유산 자연보호구를 포함한다. 2014년 옌타이시의 대외무역 교역 규모는 527.52억 달러이며, 주목할 점은 수출액 중 하이테크상품이 124.57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42.3%를 차지하였다. 2014년 신설 외국 투자 프로젝트가 220개이고 계약된 외자 규모는 26.45억 달러이다. 2014년, 한국은 옌타이시에 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중국 투자에 5.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옌타이시 통계공보, 2015). 2015년 7월 기준, 한국의 대 옌타이시 투자 기업은 총 700여 개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은 9개 (두산, LG, 대우,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가 입주해 있다(칭다오 무역관, 2015).

## 3) 한국과 웨하이시 (威海市)의 경제 및 무역 현황

웨하이시의 총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9.6배이며 인구는 2014년 말 기준, 약 281만 명이다. 웨하이시는 총 2개구, 2개 현급 시 및 3개 개발구 (웨하이 경제기술개발구, 웨하이 햇불첨단 기술 산업개발구, 웨하이 공업신구)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 교역규모는 165.87억 달러로, 수출 중 전기기계제품 수출액이 45.83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액은 전체 웨하이시의 수출입 총액의 31.5%인 52.27억 달러이며, 2014년 기준, 한국의 대 웨하이시 투자 프로젝트는 총 59개, 웨하이시 누적 합계 한국 투자 기업은 총 803개이다(웨하이시 통계공보, 2015).

## 4) 한국과 지난시 (濟南市)의 경제 및 무역 현황

지난시의 총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13.5배이며, 2014년 말 인구는 약 707만 명이다.

대외무역 교역 규모는 105억 달러로 수출액은 60.6억 달러, 수입액은 44.3억 달러이며, 외국 투자 프로젝트가 78개, 계약된 외자규모는 18.8억 달러이다. 이 중, 총 투자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8개이며, 계약액이 8.7억 달러이다. 2014년 말까지 지난 시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136개이며, 누적 계약 투자금액은 15.57억 달러이다(지난시 통계공보, 2015).

#### 4.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중 간 무역 분쟁 사례

한국과 중국은 수교 2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한중 교역 및 투자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더불어, 지난해 한중 FTA의 발효로 한중 간 경제협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라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동등, 김종혁, 김석철, 2015).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분쟁건수의 20%가 한중 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동등 외, 2014; 譚婧, 2014). 다음은 중국 산동성 지역에서 나타난 한중 간 무역 클레임 사례를 발췌하여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 1) 품질 클레임 사례

이 사건은 A/S 불충분을 이유로 잔금 지불을 거부한 기업 간 클레임 사례로, 한국 A사는 중국 산동성 B사와 1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 제품은 가격이 100만 위안에 달해 통상 대금을 1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관례인데, B사는 C를 구입하여 1년 간 사용한 뒤 잔금지불일이 다가오자 A/S 부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여 잔금 지불을 거부하고 C를 신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A사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고 기존 C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이미 C를 제3자에게 판매해 버린 상황이었다. 결국 A사는 현지 공안당국의 협조를 얻어, C를 회수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사지원비를 제공하였으며, 잔금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2).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국 내수판매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매자 신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분할상환의 경우 구매자에게 지불보증수표 발급을 요청, 만기일에 은행을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 대금결제 클레임 사례

이 사건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과도한 D/C를 요구한 기업 사례로, 한국 A사는 중국 산둥성 B사와 PTA 1,000MT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부터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시장가격은 약세로 반전되었고 이에 중국 B사는 시장가격하락을 이유로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B사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A사는 계약 조건에 의해 조속히 L/C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L/C개설 불가시 클레임 제기 및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였다. B사는 가격 조정이 되지 않는 한 L/C 개설이 어려우며, A사가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과다할 것이라며 가격 재협상을 재차 유도하였다. 결국 바이어 측 가격인하 요청금액 \$70/MT로 재협상을 진행, \$40/MT까지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L/C개설 및 결제를 완료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2). 이 또한 사전 계약 단계에 중재합의 조항을 삽입하고 시장 가격을 고려 적절한 선에서 중재 판정을 이끌어 낸다면 재협상 단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계약불이행 클레임 사례

이 사건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로, 한국 수입회사 A사는 중국 산둥성 B사로부터 F. 컨테이너 (40 M/T)를 30만 달러에 구매하는 내용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A사와 B사 간의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A사는 이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B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 그러나 B사는 중국 내 전기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을 이유로 공급이 곤란함을 주장하면서 A사에게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B사의 구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A사는 계약상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해 상당한 지연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B사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바, 이러한 사유는 A사와 B사 간 구매계약 제2조에 해당하는 Force Majeure 사태로 구매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Force Majeure에 의하면, 사태 발생 후 20일 이내에 “local chamber of commerce”가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상대방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B사는 그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A사에 제공했다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여 구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유옥흠, 2014; 王磊, 2010). 이러한 사례로 보아, 중재 조항의 삽입이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한·중 양국의 중재제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외 논문의 경우는 최근 한중 FTA와 관련하여 기존 오프라인 무역에서의 클레임과 그에 대한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e-Commerce 관련 법적 이슈나 정책적 시사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또한 실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며, 단순히 거시적 흐름과 각종 매스컴을 통한 경제 지표 및 사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결과이다. Kwon(2015)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증하는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즉, 온라인 시장의 상품, 서비스 교류에 대한 경쟁력을 위해 관세 장벽 철폐, AEO 인증 등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방안을 정책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이다. Choi(2014)의 연구는 최근 한·중 FTA로 인하여 향후 교역량이 더욱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중재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법규 또는 규범이 실무적이지 못하다고 꼬집고 있다. 즉, 더욱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중재제도를 규범화,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정부가 중재제도 개선에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중재제도 상의 변화 가능성과 특히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와 기업별 종류와 규모에 따른 중재의 적용 사례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Schott, Jung, & Cimino, 2015). Salomon & Friedrich(2015)의 연구는 동아시아 무역 클레임 연구를 통해 어떤 유형의 클레임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클레임 유형별 중재제도의 활용 사례를 들어 기업 투자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Wang(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중재 사건(특히 해상 중재제도를 중심으로)에 있어 기업 유형 및 클레임 유형에 따른 중재판정의 소요시간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설문 토대가 되어, 가설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제도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책 제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내외 선행 연구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이를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특히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산동성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이를 가설/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선행 연구와의 이론적 차별(Research Gap)을 두었다. 즉, 본 논문을 통해 중재 및 무역이론 분야에서의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실무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Ⅲ.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

#### 1.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본 설문조사는 무역업체의 클레임 발생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산둥지역에 투자한 한중 기업 간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설문조사의 대상 기업 또한 중국 산둥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다. 설문 결과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 (Demographics Information)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분석 (Descriptive Analysis)과 가설 검정을 통한 추론적 통계 분석 (Inferential Statistics Analysis)으로 나누어지며, 추론적 통계 분석을 위해 산동성 진출 기업의 규모나 업종 면에서 어떠한 유형의 기업이 더욱 빈번하게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고,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 각 기업은 어떻게 이를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러 가설에 입각하여 설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중국 산동성의 한국 기업과 클레임 유형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설문의 통계적 검정을 위한 도구로는 SAS Base v.11.1을 사용하였으며, 95%의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성을 입증하였다.

#### 2.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결과

본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산동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00개 기업에 대하여 설문을 배부하여 156부를 수거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확실치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3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내용은 회사 인적사항 및 거래현황, 무역클레임관련 질문 등 11개 문항이며, 그중 중재관련 질문은 총 7개 문항이다.

##### 1) 회사 기본사항 및 거래현황 관련 결과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중에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의 기본사항 및 거래현황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2012년-2014년 수출입액(단위: 건, %)

항 목	수 출		수 입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100만 달러 미만	6	9.4	6	9.4
100-299만 달러	7	10.9	12	18.7
300-599만 달러	7	10.9	9	14.1
600-999만 달러	6	9.4	10	15.6
1,000만 달러 이상	35	54.7	21	32.8
없다	3	4.7	6	9.4
합계	64	100.0	64	100.0

〈표 6〉에 보면 분석대상기업은 2012년-2014년 간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이 6개, 9.4%를 차지하고 수입액 100만 달러 미만의 기업도 6개, 9.4%를 차지했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 35개, 54.7%를 차지하고 수입액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21개로 32.8%를 차지했다. 분석대상기업 중에서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3개 기업이며, 전체의 4.7%를 차지하였고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은 6개로 9.4%를 차지했다. 또한, 69개 사는 수출입액을 응답하지 않았다.

〈표 7〉는 분석대상기업의 취급 품목 및 업종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사 대상기업 중 가전 및 전자 업체가 27.1%로 가장 많았고 철강 및 화학 업체가 18.8%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은 제조업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업이 24.6%로 나타났다.

〈표 7〉 업종 및 취급 품목(단위: 건, %)

구 분	항 목	빈도수	비율(%)
업종	제조업	93	68.9
	가공업	33	24.6
	서비스업	4	3.6
	기타	3	2.9
	합 계	133	100.0
취급 품목	가전, 전자	36	27.1
	철강, 화학	25	18.8
	의류	21	15.8
	자동차용품	17	12.8
	식품, 의료, 기타	34	25.5
합 계	133	100.0	

〈표 8〉은 분석대상기업의 규모를 가늠하는 종업원 수를 조사하였으며, 대상기업 중에 100명 미만의 기업이 37.6%로 가장 많았다.

〈표 8〉 종업원수(단위: 건, %)

항목	100명 미만	100~299명	300~599명	600명 이상	합계
빈도수	50	40	24	19	133
비율	37.6	30.1	18.0	14.3	100.0

## 2) 무역클레임 관련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기업이 투자회사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회사에 대한 평판과 신용도 (41.7%), 상대방의 재무상태 건전성 (26.6%), 매출액, 연혁 등 외형적인 면 (2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투자회사 선택의 고려요소(단위: 건, %)

항목	빈도수	비율(%)
매출액, 연혁 등 외형적인 면	34	24.5
상대방의 재무상태 건전성	37	26.6
회사에 대한 평판과 신용도	58	41.7
회사 경영자의 능력과 신뢰성	8	5.8
기타	2	1.4
합 계	139	100.0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후 클레임 제기/접수 건수에 관하여는 응답 업체 133개사 중 무역클레임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업체는 86개사로 조사대상의 64.7%를 차지했다. 86개사 중에서 무역클레임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64개사 (74.4%), 무역클레임을 접수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29개사 (33.7%), 제기/접수의 경험이 모두 있는 업체는 7개사 (8.4%)로 나타났다. 즉, 무역클레임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실제 접수한 경험이 있는 업체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무역클레임 경험업체 현황(단위: 건, %)

구분	빈도수		비율(%)	
	제기	접수	제기	접수
0~1건	43	23	67.2	79.3
1~3건	16	4	25.0	13.8
3~6건	3	2	4.7	6.9
6건 이상	2	0	3.1	0
합 계	64	29	100.0	100.0

〈표 11〉에서는 무역클레임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64개 기업 중, 클레임 제기 금액 10만 위안 이하의 기업은 38개사 (5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접수한 경험이 있는 29개 기업 중에도 클레임 접수금액 10만 위안 이하의 기업이 15개사 (5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1〉 클레임 제기/접수 금액(단위: 건, %)

구분	빈도수		비율(%)	
	제기	접수	제기	접수
10만 달러 미만	38	15	59.4	51.7
10만~49만 달러	14	7	21.8	24.1
50만~99만 달러	11	5	17.2	17.3
100만~499만 달러	1	2	1.6	6.9
500만~999만 달러	0	0	0	0
1000만 달러 이상	0	0	0	0
합 계	64	29	100.0	100.0

〈표 12〉에서와 같이, 분석대상기업의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색상 등 품질불량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 (37.0%)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위반 (20.5%), 대금결제불만 (13.3%), 수량, 중량부족 (12.6%), 가격위반·불만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클레임 제기/접수 금액(단위: 건, %)

항목	제기		접수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색상 등 품질불량	47	37.0	37	41.6
계약불이행·위반 등	26	20.5	4	4.5
대금결제불만	17	13.3	19	21.4
수량, 중량부족 등	16	12.6	13	14.6
가격위반·불만	12	9.5	6	6.7
선적불이행·위반 등	6	4.7	3	3.4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2	1.6	4	4.5
기타	1	0.8	2	2.2
보험계약 및 이행의 위반	0	0	1	1.1
합 계	127	100.0	89	100.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기업이 무역클레임 해결에 있어 고려한 사항으로는 ‘시간과 비용’, ‘향후 거래지속전망’이 각각 35.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해결절차에 대한 걱정이 16.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자산상태 (10.3%)는 고려사항으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13〉 무역클레임 해결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단위: 건, %)

항목	빈도수	비율(%)
시간과 비용	61	35.1
향후 거래지속전망	61	35.1
해결절차	34	16.5
상대방의 자산상태	18	10.3
합 계	174	100.0

〈표 14〉에서 분석대상기업의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은 당사자 합의가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조정 (14.2%), 한국 중재판정 (12.9%)이 뒤를 이었으며, 중국 중재판정에 의한 해결은 1.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4〉 무역클레임 해결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단위: 건, %)

당사자 합의	93	54.7
조정	24	14.2
한국 중재판정	22	12.9
중국 법원소송	15	8.8
한국 법원소송	14	8.2
중국 중재판정	2	1.2
합 계	170	100.0

〈표 15〉은 분석대상기업이 클레임 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 (30.2%)과 인간적 신뢰관계 구축 (29.6%)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련분야 전문가 조언 (2.2%)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5〉 클레임 발생예방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단위: 건, %)

항목	빈도수	비율(%)
계약내용의 이행	54	30.2
인간적 신뢰관계 구축	53	29.6
계약서 작성 철저	43	24.0
철저한 신용조사	25	14.0
관련분야 전문가 조언	4	2.2
합 계	179	100.0

〈표 16〉을 보면, 대상기업이 무역클레임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해결한 경우는 60.6% (80개사)이고 1~6개월 내 해결한 업체는 31.1% (41개사), 클레임 해결에 6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 업체는 8.3% (11개사)로 나타났다.

〈표 16〉 무역클레임 제기부터 해결까지 총 소요기간(단위: 건, %)

소요기간	빈도수	비율(%)
15일 이내	27	20.4
15일~1개월	53	40.2
1개월~3개월	34	25.8
3개월 이상	18	13.6
합 계	132	100.0

### 3. 추론적 통계 분석에 의한 결과

#### 1) 가설 설정 및 검증

위의 기술적 분석의 설문 모집단이 133개 기업이었으나 추론적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그 대상 기업의 독립변수가 되는 기업의 규모, 즉 수출입 실적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64개만을 대상기업으로 삼았다. 이들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설문 항목 중 기업 규모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무역 클레임이 제기하는지 (가설 1), 클레임 금액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가설 2), 또한, 클레임 해결까지의 소요기간 (가설 3)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유형에 따라 즉, 취급품목 (자동차, 가전, 철강 등)에 따른 클레임 횟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가설 4)와 클레임의 유형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가설 5)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업 유형과 클레임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 (가설 6)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수출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대체로 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수출입 물품에 양 당사자의 클레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국가 간 무역 규모가 클수록 클레임의 빈도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출입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자명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클수록 무역 클레임의 제기 횟수 또한 늘어나며, 클레임 금액 또한 늘어날 것이라 가정한다.

H1: 기업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 클레임의 제기 빈도는 정(+)의 관계가 있다.

H2: 기업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 클레임의 금액과는 정(+)의 관계가 있다.

대개 클레임의 경중은 그 금액과 함께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그 판별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출입 금액이 클수록 다시 말해, 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클수록 클레임 해결까지의 소요기간 또한 길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H3: 기업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 클레임 판정 소요기간은 정(+)의 관계가 있다.

같은 이유로 수출입품목 유형 즉, 생산 품목에 따라 클레임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중국 산동성 내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크게 자동차, 가전, 철강, 의류, 식품 등이 있다. 이를 생산하여 수출, 수입하는데 있어 여러 국가와 마찰이 생기며 무역 클레임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대표적인 소비재인 식품류의 경우에 검역이나 위생과 관련한 수많은 클레임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는 기타 생산재인 철강, 자동차 부품과는 분명 그 클레임 빈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취급 품목에 따라 클레임 빈도가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H4: 기업의 수출입품목 유형에 따라 무역 클레임의 제기 빈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의 수출입품목 유형은 앞서의 클레임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레임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즉, 식품과 의류는 같은 소비재이나 품질에 대한 불량 기준이 다르고 유통기한이 다르며, 운송 물류에 대한 저장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클레임의 종류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취급 품목에 따라 클레임의 종류가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H5: 기업의 수출입품목 유형에 따라 무역 클레임의 종류는 다르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출입품목 유형과 무역 클레임 예방 간에도 생산 품목과 관련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취급 품목에 따라 무역 클레임의 예방 대처 방법은 다를 것이라 가정한다.



H6: 기업의 수출입품목 유형에 따라 무역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위의 6가지 가설을 각 설문 간 관계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17>와 같다.

<표 17> 가설 검정

가설	계수	t-value	P	결과 판정	R2
H1	.428	8.178	**	인용	.607
H2	.372	7.281	**	인용	.491
H3	-.217	-3.187	*	기각	.294
H4	.347	7.718	**	인용	.472
H5	.014	0.451	n.s.	기각	.019
H6	.292	3.784	**	인용	.344

\*\*p<.01, \*p<.05

H1과 H2, 즉 기업의 수출입 규모와 클레임의 제기빈도, 금액이 정(+)의 관계가 있음은 coefficient가 0.428 (t=8.178), 0.372 (t=7.281)로 모두 인용되었으나, H3의 경우, 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판정 소요기간과 정(+)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가정은 기각되었음은 물론 오히려 부(-)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p=0.0673) 보여준다. 더불어, 기업 수출입품목 유형에 있어서는 제기 빈도 (t=7.718)와 예방 대처 방법 (t=3.784)에 대하여 각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클레임의 종류 (t=0.451)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아 이를 기각하였다.

## 2) 결과의 통계적 해석

위의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입 규모와 품목 유형에 따른 무역 클레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실질적인 그리고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H1), 무역 클레임 금액 (H2)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가설 (H3)이 기각되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그 금액의 크기와 소요 기간이 정(+)의 관계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 중재에서는 패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무역 규모가 클수록 소송보다는 중재를 취하는 것이 당사자간 판정 소요기간을 줄이

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함의를 준다(김상호, 1995; 김석철, 2013; 동등 외, 2015).

기업의 수출입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생산 품목별로 무역 클레임의 제기 빈도나 무역 클레임의 종류, 그리고 무역 클레임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에 있어서 분명 각기 다른 양상을 띠지 않을까 하는 가정(김태경, 2006; 이정은 2009) 에서 시작하여 설문을 통한 양적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H4)와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 (H6)은 분명 유의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 (H5)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방 대처 방법의 경우, 가전, 전자의 경우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이나 철저한 신용조사 분야에서 그 빈도가 높은 반면, 전통적 제조 분야인 철강, 화학 분야의 경우 인간적 신뢰관계 구축에서 그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 의료 분야의 경우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기 다른 예방 대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기각된 가설 (H5)의 취급 물품과 무역 클레임의 종류에 관하여 보면, 어떠한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가와 관계없이, 품질 불량, 계약 불이행의 클레임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산둥성 지역 간 무역 및 투자현황, 무역 분쟁 사례를 분석한 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지역 진출 한국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 및 무역 클레임 해결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중국 산둥지역 무역 및 투자현황, 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밝힌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꾸준한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최근 중국의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구인난 문제와 산둥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대금 결제나 계약 불이행 클레임 등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시환, 2011). 둘째, 무역 클레임의 주요발생 원인 중 품질 불량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중국 무역 및 투자 정책상의 거시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며, 현지 정부의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의 변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정책의 폐지 및 노무환경의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장호룡, 2014). 셋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무역 클레임의 경우, 한중 중재제도의 차이점에 의한 문제 즉, 중국 임시중재제도의 불인정과 중국 국제중재대상의 불명확성 그리고

CIETAC의 중재비용의 과다 청구 및 중재판정기한의 불명확성 등이 존재한다(장두채, 2000, 韩波, 2008). 넷째, 분쟁사례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고가 장비에 대한 분할 상환 계약의 경우, 기업의 신용조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리스크는 향후 무역 및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김석철, 2011, 于文婷, 2009). 다섯째, 설문조사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중재 판정의 활용도가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소송에 비해 중재를 통한 해결의 비율이 앞서기는 하지만, 클레임 건수에 비해 중재판정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재판정의 경우 전체 무역 클레임 해결 방안 중 약 1.2%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한중 무역 클레임에 있어서의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정책을 점차 축소하고 있지만, 중국 서부 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나 IT, 생명공학 등 하이테크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부지역 개발, 친환경 기업 확대, 농촌 개량화 등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분야에서의 투자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 당사자는 품질 관리를 면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 수출상으로 하여금 공장에서의 정기적인 품질 감독을 시행토록 하며, 전문검사인증기구를 활용, 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중재의 임의중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중국에서 임의중재가 허용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우선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재법에서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재법 규정에 임의중재인의 선정방법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지 및 분쟁발생시 적용할 절차규칙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판정집행 과정에서 임의중재와 기관중재에 동등한 요구조건과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김석철, 2013). 넷째, CIETAC의 중재비용 및 중재판정기한이 감축되어야 한다. 중국 CIETAC의 중재비용과 중재판정기한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아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중재 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중재 활용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다섯째, 당사자는 무역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엄격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간 잠재적인 클레임을 막을 수 있다. 여섯째, 중국 중재 및 분쟁해결방법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국 CIETAC은 여러 선진 외국 중재기관과의 정보교환, 중재기술교류 및 협력관계의 구축 등을 통해 국제화 촉진 및 대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중국해사중재위원회, 2016).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무역 및 투자 현황, 그들이 생각하는 제도적, 실무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단순 문헌에 의한 조사나 사례 소개를 통한 함의를 밝히는 외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클레임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생생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의 정책적 수요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추론적 통계에 따른 가설/검정을 실시하여 학술적 측면에서의 기여 또한 상당하다고 자평한다. 더불어, 본 연구가 향후 산둥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상호(1995),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발생과 당사자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2호, pp.125-143.
- 김석철(2013), 「무역클레임중재실무론」, 청목출판사.
- 김석철(2011), 「무역계약론」, 도서출판 두남.
- 김태경(2006),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무역상무학회」, 제29호, pp.34-5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2), 「대중국 무역분규 사례/ KOTRA 중국지역본부편」, KOTRA.
- 동등·김석철(2014), “중국의 대외무역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pp.67-87.
- 동등·김종혁·김석철(2015), “상사분쟁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pp.89-109.
- 문환규·김재철·임형섭·조창완·王信東(2014), 「중국 산둥성의 투자환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유옥흠(2014), 「한·중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이시환(2011), 「최신무역실무강의」, 도서출판 신양사.
- 이정은(2009), 「한·중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장호룡(2014), 「한·중 해상중재제도의 관한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 장두채(2000), “중국의 해외무역 분쟁해결 관련 관행에 관한 연구,” 「대학논문집」, 제19권 제2호, pp.175-194.
- 칭다오 무역관(2015), 「중국/산둥성 경제 현황」, KOTRA.
- Choi, W. M.(2014), “Composing an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China-Japan

- FTA," *Regional Cooper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s in Asia*, p.146.
- Kwon, S. K.(2015),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 China F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pp.9-17.
- Salomon, C., and Friedrich, S.(2015), "Investment Arbitration in East Asia & Pacific: A Statistical Analysis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Free Trade Agreements and Investment Arbitrations in the Region-Annex Materials,"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Asia Special 2015*, p.15.
- Schott, J. J., Jung, E., and Cimino, C.(2015), "An Assess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No. PB15-24).
- Wang, C.(2014),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An Alternative for East Asia," *JE Asia & Int'l L.*, 7, p.427.
- 王磊(2010), 「한·중간 무역클레임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연구」, 暎園大學校 大學院.
- 于文婷(2009), 「中國 投資環境의 變化에 따른 韓國企業의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 韩波(2008), "仲裁当事人制度:缺失与构建," 「民事程序研究」, 第10期, p.37.
- 谭婧(2014),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成均馆大学校.
- 산동성 상무부 Available at <http://en.sdfao.gov.cn/col/col830/index.html>
- 엔타이시 통계공보 Available at <http://tjj.yantai.gov.cn/>
- 웨하이시 통계공보 Available at <http://www.stats-wh.gov.cn/>
- 중국해사중재위원회 Available at <http://www.cmac-sh.org/intercession/intercession.htm>
- 지난시 통계공보 Available at <http://www.jntj.gov.cn/>
- 칭다오시 통계공보 Available at <http://www.stats-qd.gov.cn/statsqd/index/index.shtml>

## An Empirical Study of the Dispute Resolution for the Korean Companies in Shandong area of China

Jong-Hyuk Kim

Dong Deng

Suk-Chul Kim

---

### Abstract

This study, with reference to data on economic conditions in Shandong Province, China, looked into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Korea and major cities of Shandong - Qingdao, Yantai, Weihai and Jinan - and investigated claim cas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typ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matter empirically by conducting a survey administered to 300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Shandong Province and, based on the data, tested hypotheses for inferential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 while hypotheses in which the size of a firm, represented by import and export volume,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trade claim filings (H1) and with the financial value of the trade claims (H2) were quoted, company size proved to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with the time required to obtain a claim decision, which rejects the third hypothesis (H3) in which the relation was thought to be positive: ii) while products, as represented by the type of business, showed a clear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frequency of trade claim filings (H4) and with methods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laims (H6), they did not show a significant link to the type of trade claim (H5). This study i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of Korean companies based in Shandong Province of China, and can be used to address the practical needs of the Korean companies looking to start business in Shandong Province.

---

(Key Words) Shandong Area of China, Trade Dispute, Inferential Analysis, Firm Size, Type of Business